

형사사건의 법률상식 (2)



김상배

농협중앙회 하나로봉사실 과장

지난달에 형사사건의 주요한 용어와 수사절차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호에서는 검사의 수사가 끝난 후 형사사건의 절차와 처벌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형사사건의 절차나 처벌내용(형량)은 모두 법률로써 정해져 있으므로 설명의 주안점을 용어해설과 일반적인 절차해설 중심으로 전개하기로 한다.

그것은 우리 농업인과 축산인이 형사사건을 수사하거나 재판하는 사람이 아닌 관계로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만약 형사피의자 신분이 되더라도 농업인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유능한 변호사의 성실한 변호와 보호를 무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농업인은 골치아픈 법률문제로 속 끊임 필요가 없으나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뛰어나오는

여러 가지 전문용어와 그 개념은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하겠기에 용어해설 중심으로 설명코자 하는 것이다.

1. 기소와 불기소

검사는 경찰로부터 넘겨받은(송치받은) 사건이나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한 사건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사건의 원인과 성격, 의미를 생각하고 사회와 국가를 위해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피의자가 재판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데 이것을 기소 또는 공소제기라고 한다.

검사에 의해 기소된 피의자는 이때부터 피고인이 된다.

그렇지만 모든 피의자가 모두 기소되는 것은 아니고 검사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처분을 받게 된다.

징역형이나 금고형같은 중형에 처하는 것보다는 별금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된 사건의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별금형을 요청하는 뜻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약식기소라고 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석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검사의 의견에 불구하고 사건을 검토한 판사가 약식절차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게되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다.

또 피의자가 별금형마저도 억울하다고 생각하거나 검사의 조사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지나쳤기 때문에 오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의 정식재판 청구기일은 7일이다.

약식기소일 경우 검사의 구형량에 해당하는 별금과 같은 금액을 미리 납부(예납)하도록 하고 있다.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후 얻은 결론이 재판에 회부할 수 없는 것이거나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 옳다거나 더 낫다고 판단되면 기소하지 않는다.

이것을 불기소처분이라고 하는데 기소유예, 무혐의처분, 각하처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피의자가 저지른 죄가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도나 피해가 가볍거나 피의자의 나이, 품행, 평소행동, 주변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원인과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후의 여러정황 등을 잘 살펴보고 피의자의 장래와 사회적 이익 등을 생각해서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한번 기회를 주어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옳겠다고 판단한 경우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고(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용서해 주는데 이것을 기소유예라고 한다.

그러나 어쩔수 없는 상황때문이든 주변여건 때문이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함부로 용서하면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사회질서와 법률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기소유예처분은 그만한 이유나 논리가 있어야 하고 또 범법자가 다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방식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위촉된 선도위원이 피의자의 새로운 삶을 도와주고 행실을 교화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한다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그리고 이제도가 확대된 후 다시 범죄에 빠지지 않는 효과가 높아 최근에는 널리 활용되어 많은 성과를 얻고 있다고 한다.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때 「무혐의」처분을 한다.

무혐의 처분은 지금까지 범죄용의자로 지목되어 피의자 신분이던 사람이 공권력으로부터 무고한 사람이라는 확인을 받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런데 흔히 빚을 갚지 않아 사기나 횡령, 배임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된 사람이 수사결과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에 형사사건의 시작에서는 범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것이지만 민사상의 채무, 즉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때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시 기소하지 않지만, 만약 똑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렀을때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을때는 불기소 처분했던 사건이라도 다시 기소 할 수 있다.

그리고 고소나 고발이 있다고 하여 검사가 반드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살펴본 결과 그것만으로는 범죄事實을 알 수 없거나 너무 가벼운 사건, 검토한 결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된 사건인 경우 검사는 고소나 고발을 당한 사람을 부르지도 않은채 사건을 마무리 할 수도 있다.

이것을 각하처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회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고소, 누구에게도 이익이 없는 고발, 고소와 고발의 남용에 따른 사회적 낭비를 막아주고, 고소와 고발을 당한 사람의 인권과 이익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다.

2. 보석

최근에는 법원의 기본방침이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피의자들이 구속되지 않은 불구속상

태에서 재판을 받는 일이 많아졌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해 주려는 노력으로서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고 또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일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흉악범을 비롯한 무거운 범죄,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애버릴 것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한다.

구속은 피의자를 구치소에 가두어 두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그 불편함과 고통이 비할데 없이 크게 된다.

검사에 의해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법원에 구속을 풀어 주고 재판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보석신청이라고 한다.

이때 대부분 보석보증금이라하여 도망이나 다른 나쁜짓을 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는 보증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편리함이 크게 늘고 부담은 줄어들었다.

보석은 피고인 당사자가 청구할 수도 있고 변호인이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등이 청구 할 수도 있다.

보석신청을 받은 경우 재판부는 일단 검사의 의견을 물은 다음 보석할 것인지, 보석을 승인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검사가 반대하더라도 법원측이 보석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할 때는 보석을 허락하지 않는다. 또 증인이나 피해자, 사건관계자나 그 가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역시 보석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법원은 피고인의 재산정도, 성품, 범죄의 성격, 증거확보관계 등을 세밀히 살펴 보석을 허락하지 되 합당한 보증금을 납부토록 하며 함부로 멀리 나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주거를 제한하는 등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울러 피고인이 법률절차를 모르거나 또 다른 어떤 이유로 보석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판단해 볼 때 보석을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법원

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기도 한다.

3. 재판

검사가 기소한 사건은 법원이 심판한다. 법원은 기소된 사건을 확인하고 사실을 규명하며 증거를 검토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심문과 답변을 듣게 되는데 이것을 공판이라고 한다. 즉 재판은 1차, 2차, 3차 등 여러 차례의 공판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부르는 것이다. 이때 범죄혐의자는 피고가 되고 검사는 원고가 된다.

약식기소된 사건은 따로 공판을 열지 않고 서류기록만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공판은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원 건물에 마련된 공판장에서 열리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이나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의 판사는 원고측인 검사의 주장과 피고인의 항변, 호소를 듣고 증거를 검토하여(심리) 유죄인과 무죄인의 판단을 하게 된다(판결).

심리결과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판사는 유죄판결을 하고 그에 따라 형량을 정해준다(선고).

형량은 징역, 금고 같은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일정기간 그 집행을 미루어주는 집행유예를 덧붙여 주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일정한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하는 수도 있다.

실형은 선고된 형량, 예를 들어 징역 1년이면 1년간 교도소에서 징역형을 받아야하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집행유예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그 기간 동안 성실히 생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형량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자체를 미루었다가 일정기간 아무일없이 지나가면 기소자체가 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

기소한 사건을 면밀히 심리한 결과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충분치 않을 때, 증거의 확보방법이 적절하지 않을 때 판사는 무죄를

선고한다.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재판기간중 구속돼있었다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므로 구속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따로 형사보상법이 만들어져 있어서 보상절차와 기준이 모두 정해져 있다.

재판할 때 흔히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 등의 말을 듣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1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은 단독판사가 심판하고,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은 판사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담당 한다. 따라서 단독판사의 판결에 불복일 경우 지방법원의 항소부에 항소하여야하고 합의부의 판결에 불복일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항소하여야 한다.

4. 형의 집행

법원의 판결로 형이 확정되면 검사의 지휘로 형을 집행하는데 징역이나 금고형은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 한다. 이때 형의 집행날짜를 계산할 때 판결이전에 구속된 날짜를 집행일자에 포함시켜준다.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금액을 날짜로 계산해서 3년이내의 기간범위내에서 노역장에 유치된다.

5. 가석방

징역이나 금고형으로 교도소에 복역중인 사람이 선고된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도중에 석방되는 경우가 있다.

교도소의 규칙을 잘 지키고 과거 잘못을 뉘우쳐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려고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을 가석방하게 된다. 가석방은 선고된 형의 3분의 1이상을 살았거나 무기징역형은 10년 이상을 복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가석방 기간은 남아있는 형벌기간(형기)이 되고 무기형의 경우는 10년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가석방 기간중에는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는지, 성실한 생활을 하는지를 감시, 관찰하는 보호관찰을 받는다.

이것은 범죄자의 새로운 삶을 도와주는 동시에 사

회전체에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하려는 배려인 것이다. 그러므로 가석방 기간중에 행실이 나쁘거나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석방이 취소되어 남은 형기에 대한 벌을 받게 된다.

또 죄인 중 임신 6개월 이상인 사람, 70세가 넘은 고령자, 중환자 등은 형집행을 정지시켜 줄 수 있다.

6. 형의 실효 - 전과말소

흔히 범죄를 저지르고 형벌을 받은 사람을 수형자 또는 전과자라고 한다. 그리고 전과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심한 차별과 냉대, 외면을 받아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전과자라고 하여 평생동안 불이익을 받게되며 종신형벌을 받는 끝이 되고 또 그것은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벌을 받은 사람이 그 형벌이 끝났거나 면제되었을 때 범죄피해자에게 손해를 모두 갚아주고 다른 범죄나 형벌을 받지 않은채 7년을 지나면 형의 실효, 즉 전과말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너무 전문적이고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우므로 정부에서는 따로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당사자의 신청절차 없이도 자동적으로 형을 실효시키도록 배려해주고 있다.

또 새정부 출범시에 이 법을 다시 개정하여 형의 실효기간을 단축해주어 전과자(수형인)의 사회복귀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었다.

새법에 따른 형의 실효기간은

▶ 구류나 과료의 형은 그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된 때 즉시 이루어지고

▶ 벌금형은 2년

▶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5년

▶ 3년초과 징역이나 금고는 10년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수형인, 즉 전과자가 사회에 되돌아와 일반인과 똑같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굳은 의지와 노력, 주위의 배려와 도움, 애정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배려와 노력을 수형인 한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사회 모두를

위한 것이기도 한 것이다.

7. 형사사건과 합의

간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몸으로 때우겠다”고 큰 소리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남에게 어떤 손실을 입혔다면 반드시 그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하물며 범죄를 저질러 남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당연히 그 손해를 배상해 주고 피해자와 합의해야 한다.

또 합의를 하면 재판에서 형벌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손해의 배상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의 민사문제이므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강요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재판의 절차에서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였다면 따로 민사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지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외면하여 합의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형사재판과정에서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어져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고 피해자가 따로 청구하는 민사재판에서 패소하게 될 뿐 아니라 재판비용까지도 부담해야 하게 되며 형을 마친후 사회에 돌아가서도 끝없는 청구와 비난을 받게 되므로 결국 큰 손해를 보게된다. 그리고 그러한 비난이나 나쁜 평판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 전체와 나아가 자식의 입신출세에도 큰 지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먼저 어떠한 경우라도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하겠지만 뜻하지 않은 일로 남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최선을 다해 그 손해를 배상해주고 용서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인 것이다.

8. 알아두어야 할 일

법은 우리 모두의 평화로운 생활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법률도 많아지고 어려워져 생활에 관련된 법이라도 모두다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리고 어쩔수 없이 법을 어기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축산농가의 경우라면 방역관계, 위생관

계, 환경보전관계, 초지나 임야관계, 농지관계 등의 분야에서 범법을 할 경우가 있게 되며 사료나 가축, 축산물, 축산기자재 등의 계약과 거래과정에서도 법을 어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만약 범법 협의를 받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거나 조사를 받게 되면 누구라도 대단히 당황하여 현명한 판단을 하기 어렵게 된다. 이때에는 관련자료를 모두 갖추어 가까운 농협을 통해 법률구조를 신청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농협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공동으로 「농업인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 ◆ 법률상담
- ◆ 소송대행
- ◆ 강제집행 등

법률분야 전반에 걸치고 있으며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 ◆ 기소전에는 상담과 지도

◆ 기소후에는 변호를 맡아주고 있고 변호사의 수임료까지 무료로 해 주므로 가장 알차고 손쉬우며 좋은제도인 것이다.

아울러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 같은 일로 피의자가 되었을 때 수사기관에 빌이 넓은 사람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처리하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소위 사건 브로커라고하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또 우둔한 일이다.

형사사건이 청탁이나 압력으로 해결되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며 사건 브로커는 그 자체가 위법행위이고 실제로 브로커에 의해 해결되었거나 해결에 영향을 미친사건은 하나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사건 브로커는 가해자나 범범자의 당황스러운 심리상태와 법에대한 무지를 악용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것일뿐 사건해결에는 관심도 능력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민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농협을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보호와 협력을 받는 것이 최선이고 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어려운 농민을 위해 항상 대기하고 있음을 꼭 알아두어야 한다. ☺

(필자연락처 : 02-397-5555)